

205.2 호

### 행 정 명 령

#### 뉴욕을 방문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역 제한

뉴욕주가 코로나 19 확산 속도를 성공적으로 둔화시켰으므로

뉴욕주가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인 주에서 가장 낮은 감염률을 보이는 주로 바뀌었으며, 코로나 19 확산을 잘 통제하고 있는 주에 해당하므로

주지사가 뉴욕주 재개에 신중하고 점차적인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착수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덜 신중한 접근법을 취한 다른 주들은 코로나 19의 더 큰 확산을 겪고 있으므로

뉴욕은 트리스테이트 지역에서 코로나 19의 추가 확산에 의한 모든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제기된 심각한 위험에 비추어, 이웃 주와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의 진행 상황을 막아야 하므로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헌법과 뉴욕주 법률, 구체적으로 IV 조 제 1 항에 의거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 및 지시합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5 호에 따라 발행된 여행 경보를 수정하여 고속도로 게시판과 모든 뉴욕 공항에서 뉴욕에 진입하는 모든 주요 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널리 알립니다.

이웃 주 외의 주에서 뉴욕에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부 격리 규정에 따라 14 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뉴욕 외부에서 24 시간 미만로 여행한 여행객의 경우, 여행자는 주에서 출발하기 전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도착 시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행자는 주에 들어올 시 여행자 양식을 계속 작성해야 하며, 뉴욕에 도착한 후 4 일째에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뉴욕 이외의 지역을 24 시간 넘게 여행한 여행객의 경우, 해당 여행자는 해당 주에서 출발하기 전 72 시간 내, 뉴욕에 도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자는 뉴욕에 도착하면 도착 시부터 최소 3 일 동안 보건부 지침에 따라 격리해야 하며, 4 일째에 격리를 종료하기 위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두 번째 음성 검사 결과를 받으면 격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커미셔너는 필수 근로자를 위한 추가 프로토콜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격리가 불가능한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이뤄지는 경우 추가 프로토콜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본 수정된 경보는 2020년 11월 4일 오전 12시 01분에 커미셔너가 철회할 때까지 발효됩니다.

보건부의 여행 경보에 의거하여 지역 보건부 또는 주 보건부에서 개인에게 발행한 검역 또는 격리 명령 위반은 공중 보건법 제 21 조에 따라 시행될 수 있으며, 공중 보건법 12 항에 따라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대 10,000 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